

2022년 6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주요 변경사항

유럽식품안전청(EFSA), 감자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 세닥산(sedaxane) 최대 잔류 허용 기준 (MRL) 수정

- 이번 달 9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감자에 잔류하는 농약 세닥산(sedaxane)*의 기존 최대 잔류 허용 기준치(MRL)를 조정한다는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표

* 세닥산(0211000)의 최대 잔류 허용 수준(MRL)은 규정 (EC) No 396/2005의 부속서 I에 규정되어 있음

- 이번 개정은 관련 규정(EC) No 396/2005의 6조에 따라 2016년 프랑스의 한 업체 측에서 현 세닥산 MRL 수정을 제안하는 신청서 제출이 시초가 됨. 해당 회원국(Evaluating Member State, EMS)은 감자에 잔류하는 세닥산 농약의 현 MRL 기준치(0.02mg/kg)가 의도적 세닥산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과 맞지 않음을 들어, 그 기준치를 0.15mg/kg로 상향 수정하는 제안서를 규정 (EC) No 396/2005의 8조에 의거해 EU위원회 측에 송부, 이어 EFSA 측에 전달

- EFSA 측은 MRL 기준치를 규율하는 EU 규정과 2022년 3월 EMS 측의 추가적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 및 동물에 대한 위해평가를 시행. 그 결과 감자에 잔류하는 세닥산의 현 MRL 기준치 0.02mg/kg를 0.15mg/kg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서에 동의, 이를 승인함

- 특히 소비자 위해평가에 있어 감자에 잔류하는 세닥산이 단시간의 경구섭취로 소비자에게 건강상 위해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세닥산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감자 가공식품의 섭취를 통해서도 해당 물질의 일일허용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해 관련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오히려 두 실험에서 플레이크나 감자튀김과 같이 가공식품에서 해당 농약 잔류 수치가 감소함을 보임
- 따라서 EFSA 측은 회원국의 제안서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감자에 잔류하는 세닥산 농약 기준치 완화가 세닥산의 독성학적 특성에 소비자가 최대 노출되는 정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밝히며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음
- 그러나 이번 기준치 완화의 승인은 식물과 가축의 신진대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바, 향후 식물과 가축의 신진대사에 있어 세닥산의 영향이 소비자 노출 정도를 높일 수 있어 관련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

※ 출처: <https://www.efsa.europa.eu/en/efsajournal/pub/7371>

□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은 회원국의 신청과 신규 조사를 통해 플로니카미드에 이은 유럽연합의 또 다른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의 완화 예시를 보여줌. 이렇게 개정되는 유럽 규정을 잘 참고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II

통관 및 검역 관련 주의사항

1. 통관 동향 등 이슈

수입식품에 함유된 에틸렌옥사이드(EO) 성분 일시검역강화 관련 EU 규정 6차 개정안([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913](#)) 7월

시행 예정

- 최근 6월, 유럽연합집행위는 EO 성분 일시검역강화 관련 2021년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일시검역강화 대상국과 항목을 추가한 6차 개정안 발표. 이번 6차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발효 예정
- EO는 RASFF 소개 페이지에 별도의 메뉴가 있을 정도로 유럽연합 내 주요 식품 이슈 중 하나. 이에 EU 식품안전 기준치에 따라 일시검역강화의 대상국, 품목, 검역항목 등을 규정한 EO 성분 일시검역강화 관련 EU 시행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1793)을 제정, 2019년 12월 14일부터 발효 중
- 해당 시행 규정은 매년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개정안을 발표. 이번 연도 1월 초 발효된 5차 개정안의 경우, 2020년부터 불거진 EO 이슈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국산 라면 및 건강보조식품 등을 포함, 몇몇 검역품목이 추가됨
- 이번 6차 개정안은 한국산 식품(라면과 건강보조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일시검역강화를 유지함을 규정하나, 특히 인스턴트면류의 항목 검역강화대상을 구체화. 즉, 건면, 계란면, 쌀국수 등과 같이 인스턴트 면류로 분류되지 못하나 해당 HS CODE(1902 30 10)로 신고되는 면 종류와, 검역강화대상이 되는 인스턴트면 품목을 분명히 하고, 품목설명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함 : “향신료/양념 혹은 소스를 함유한 인스턴트면(Instant noodles containing spices /seasonings or sauces)” (* 부속서 II 1번째 부류)

* 첨부파일 참조

- 향후 7차 개정안으로는 2022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당년 하반기 관련 실무회의 시 2023년 상반기 적용할 7차 개정안 초안 작업을 예상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2R0913>

2. 변동사항

한국산 인스턴트 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EO 일시검역강화는 적

어도 2022년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일부 수입항에서 라면이 아닌 건면, 쌀국수 등까지 "인스턴트 면류"로 검역대상에 포함하여 혼선을 초래하였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검역대상 품목을 "향신료/양념 혹은 소스를 함유한 인스턴트 면"으로 구체화함. 따라서, 스프 등을 포함하지 않는 국수류, LL(long life)면, 당면 등은 검역증명서 없이 통관 가능하며, 해당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건강보조식품 중 1302, 2106 HS코드로 수출하는 경우도 EO 일시검역강화 대상임을 주지하여 준비해야 함. 2022년 하반기 관련 신고건수가 추후 적용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업체에서는 EU의 품질기준과 검역증명서 조건을 철저히 지켜 적발건수 최소화 노력이 필요.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6월)

- 면, noodles (2022.06.03.)
 - 통관번호 2022.2648
 - 건강 증명서 부재
 - 스페인에서 공식 압류
- 인스턴트 라면, Instant noodles (2022.06.08.)
 - 통관번호 2022.3368
 - 에틸렌 옥사이드 면, 소스, 파우더에서 각각 0,027 +/- 0,14 mg/kg - ppm, 0,28 +/- 0,14 mg/kg - ppm, 10,7 +/- 5,4 mg/kg - ppm 검출 (기준 MRL : 0,01 mg/kg - ppm)
 - 독일에서 폐기 처리 및 재발송 예정
- 냉동 참치, frozen tuna (2022.06.20)
 - 통관번호 2022.3607
 - 온도 조절 문제
 - 스페인에서 공식 압류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